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1
----------	-----

발의연월일 : 2024. 08. 23.

발의자 : 이진환, 박경원, 김지훈(국)

김영실, 이수련, 김지훈(민)

이상기, 김상수, 한송연

이경숙, 박경원

1. 제안 이유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하고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전점검”, “사후점검”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9조)

마.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6. 관련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따른다”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이하 “설치대상”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장애인의 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남양주시의회 의원 1명 이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4.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지도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 등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3. 남양주도시공사
 - ⑤ 시장은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설>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장애인의 날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행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남양주시의회 의원 1명 이상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

검)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 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4.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 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
황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 등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
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
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
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
는 비영리법인

3. 남양주시공사

⑤ 시장은 센터가 설치되지 않
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
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
원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 ~ 제21조 (생략)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장애인의 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 제4조 제2항) 향후 교통약자를 위한 행사 등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렵지만, 현재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이동지원 차량(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을 해당 교통약자에게 무료로 운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며, 이는 기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어 추가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음

* 민간위탁금: 24년 7,089백만원(국589, 도1,950, 시4,550) /
23년 5,373백만원(국373, 도1,500, 시3,500)

- (개정안 제20조 제1항) 본 개정안에 기존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조항(제4조제1항)이 동일하게 이전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수반사항이 없음

4. 작성자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3. 3. 23., 2019. 4. 23., 2023. 5. 16.>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